제 101 호 2018-16호 (2018.12.03.)

KLSI ISSUE PAPER

www.klsi.org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시회연구소 이시장

[목차]

- I. 비정규직 규모
-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50(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 3층 전화 02) 393-1457 팩스 02) 393-4449

WWW.facebook.com/klsiedit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8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 수는 2016년 8월 874만 명(44.5%)에서 2017년 8월 843만 명(42.4%)으로 31만 명(2.1%p) 감소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821만 명(40.9%)으로 1년 만에 다시 22만 명(1.5%p) 감소했다.

둘째,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지난 1년 동안 파견용역근로가 87만 명(4.4%)에서 79만 명 (3.9%)으로 9만 명(-0.5%p) 감소했고, 장기임시근로가 453만 명(22.8%)에서 417만 명 (20.8%)으로 36만 명(-2.0%p) 감소했다. 이에 반해 기간제는 293만 명(14.7%)에서 300만 명(15.0%)으로 7만 명(0.3%p) 증가했고, 시간제는 266만 명(13.4%)에서 271만 명 (13.5%)으로 5만 명(0.1%p) 증가했다. 파견용역근로 감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17년 8월 58.0%에서 2018년 8월 59.3%로 1.3%p 개선되었다. 주당 노동시간은 정규직이 43.2시간에서 43.0시간으로 0.2 시간 감소한데 비해, 비정규직은 37.8시간에서 36.7시간으로 1.1시간 감소했다. 그 결과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0%에서 50.7%로 0.3%p 조금 확대되었다.

넷째, 임금불평등(상위10%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17년 4.13배에서 2018년 3.75배로 개선되었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5.63배에서 5.04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했다.

다섯째, 법정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7년 7,530원으로 1,060원(16.4%) 인 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175만 명(8.8%)에서 237만 명(11.8%)으로 62만 명(3.0%p) 증가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66만 명(13.6%)에서 311만 명(15.5%)으로 45만 명(1.9%p) 증가했다.

여섯째, 시급제 노동자(173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6만 명(3.4%)이고, 최저임금 (7,530원) 그대로 받는 사람은 84만 명(48.8%)이다. 이것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의 임금 결정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16년 8월 234만 명(11.9%)에서 2017년 8월 245만 명(12.3%)으로 11만 명(0.4%p) 증가한데 이어,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1년 만에 다시 5만 명(0.2%p) 증가했다.

끝으로 지금까지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2년 사이 비정규직/임금격차/저임금계층은 줄고, 조합원수는 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노동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앞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좀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많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퉁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18.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1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821만 명(임금노동자의 40.9%)이고 정규직은 1,184만 명(59.1%)이다. OECD 국가들은 시간제근로가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간제근로가 300만 명(15.0%)으로 가장 많다. 하지만 시간제근로(파트타임)도 꾸준히 늘어나 271만 명(13.5%)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94.6%(821만 명 가운데 777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보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수(천	명)			비율	(%)	
			상용	임시	일용	전 체	상용	임시	일용	전 체
임금노동자	- (1)		13,795	4,859	1,391	20,045	68.8	24.2	6.9	100.0
정규직	(2=1-3)		11,838			11,838	59.1			59.1
비정규직 (3=①++⑧, 중복제의	기)	1,957	4,859	1,391	8,207	9.8	24.2	6.9	40.9
	임시근로		1,516	4,859	1,391	7,766	7.6	24.2	6.9	38.7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		3,071	1,095	4,166		15.3	5.5	20.8
고등계극	한시근로	2	1,516	1,788	297	3,601	7.6	8.9	1.5	18.0
	(기간제)		1,486	1,323	195	3,004	7.4	6.6	1.0	15.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3	403	1,824	481	2,708	2.0	9.1	2.4	13.5
	호출근로	4			801	801			4.0	4.0
	특수고용	(5)	13	473	19	505	0.1	2.4	0.1	2.5
근로제공	파견용역		467	226	92	785	2.3	1.1	0.5	3.9
방식	(파견)	6	116	61	12	189	0.6	0.3	0.1	0.9
	(용역)	7	351	164	80	595	1.8	0.8	0.4	3.0
	가내근로	8	11	18	25	54	0.1	0.1	0.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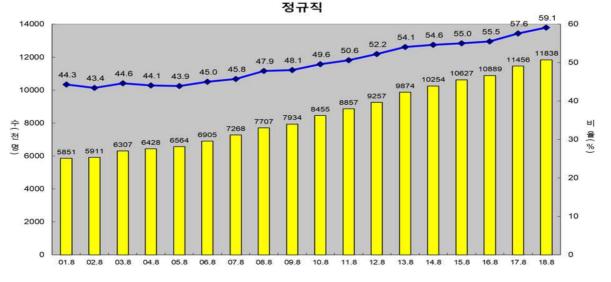
비정규직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8월(737만 명)부터 2007년 8월(86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8월(840만 명)부터 2016년 8월(874만 명)까지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8월(843만 명)에는 1년 사이 31만 명 감소했고, 2018년 8월(821만 명)에는 다시 22만 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 (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7년 8월(42.4%)에는 1년 사이 2.1%p 감소했고, 2018년 8월(40.9%)에는 다시 1.5%p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585만 명)부터 2018년 8월(1,164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44.3%)부터 2005년 8월(43.9%)까지 44%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 8월(45.0%)부터 2018년 8월(59.1%)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KLSI ISSUE PAPER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주1)}

		-	수(천 명)			비율(%)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8월	
임금노동자	18,776	19,311	19,626	19,883	20,045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0,254	10,627	10,889	11,456	11,838	54.6	55.0	55.5	57.6	59.1	
비정규직	8,522	8,684	8,737	8,427	8,207	45.4	45.0	44.5	42.4	40.9	
임시근로	8,225	8,382	8,405	8,035	7,766	43.8	43.4	42.8	40.4	38.7	
장기임시근로	4,817	4,712	4,754	4,527	4,166	25.7	24.4	24.2	22.8	20.8	
한시근로	3,408	3,671	3,651	3,509	3,601	18.2	19.0	18.6	17.6	18.0	
(기간제)	2,749	2,859	2,929	2,925	3,004	14.6	14.8	14.9	14.7	15.0	
시간제근로	2,032	2,236	2,483	2,659	2,708	10.8	11.6	12.7	13.4	13.5	
	805	876	863	792	801	4.3	4.5	4.4	4.0	4.0	
특수고용	524	494	495	493	505	2.8	2.6	2.5	2.5	2.5	
파견용역	799	866	898	873	785	4.3	4.5	4.6	4.4	3.9	
(파견)	195	210	201	186	189	1.0	1.1	1.0	0.9	0.9	
(용역)	604	656	696	688	595	3.2	3.4	3.5	3.5	3.0	
가내근로	58	55	41	30	54	0.3	0.3	0.2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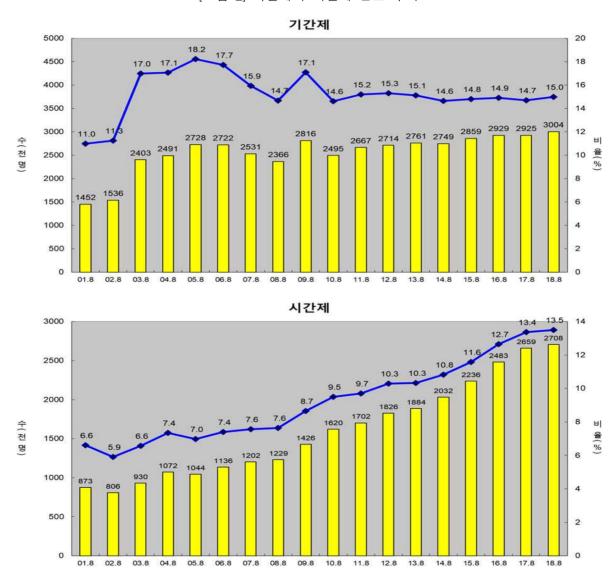
주1)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 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 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53번 응답 2)
 - ③ 시간제근로: 문항 54번 응답 2
 - ④ 호출근로: 문항 52번 응답 1
 - ⑤ 특수고용: 문항 57번 응답 1
 - ⑥ 파견근로: 문항 55번 응답 2
 - ⑦ 용역근로: 문항 55번 응답 3
-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 친 파견용역근로 분석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 ⑧ 가내근로: 문항 58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세부 고용형태 추이를 살펴보면, 기간제근로는 2005년 8월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 제보호법에 힘입어 2008년 8월 237만 명(14.7%)으로 감소했다. 2009년 8월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때문이며, 2010년 8월 250만 명(14.6%)에서 2018년 8월 300만 명(15.0%)으로 14~15%대에서 고착화되고 있다.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8년 8월 271만 명(13.5%)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2]와 [표 2] 참조).



[그림 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8월 43만 명(3.0%)에서 2007년 8월 77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8월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6년 8월 90만 명(4.6%)에서 2018년 8월 79만 명(3.5%)으로 2년 사이 11만 명(1.1%p) 감소했다([그림 3]과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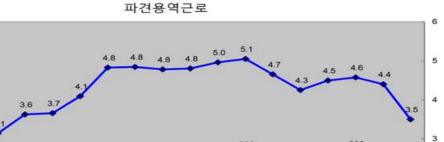
[그림 3] 파견용역근로

02.8

03.8

04.8

수(천명)



05.8 06.8 07.8 08.8 09.8 10.8 11.8 12.8 13.8 14.8 15.8 16.8 17.8 18.8

호출근로는 2011년 8월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8년 8월에는 80만 명(4.0%)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은 2001년 8월 79만 명(6.0%)에서 2018년 8월 51만 명(2.5%)으로 감소했고,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5만 명(0.3%)으로 감소했다.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계나 정부 추산보다 크게 적을 뿐 아니라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그림 4]와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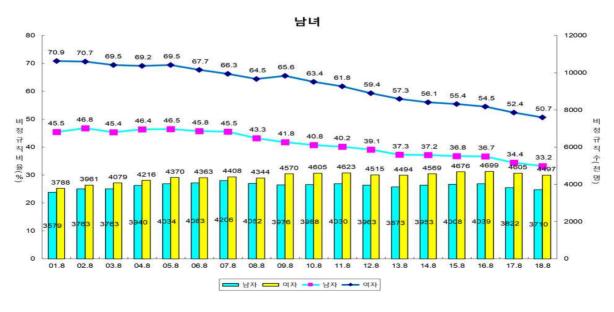
3. 남녀

남자는 정규직이 746만 명(66.8%), 비정규직이 371만 명(33.2%)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438만 명(49.3%), 비정규직이 450만 명(50.7%)으로 비정규직이 조금 많다.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 8월(70.9%)부터 2018년 8월(50.7%)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성 비정규직도 2005년 8월(46.5%)을 정점으로 2018년 8월(33.2%)까지 감소하고 있다. 2007년 8월에는 여성 비정규직이 남성 비정규직보다 20만 명 많았는데, 2018년 8월에는 79만 명으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표 3]과 [그림 5] 참조).

[표 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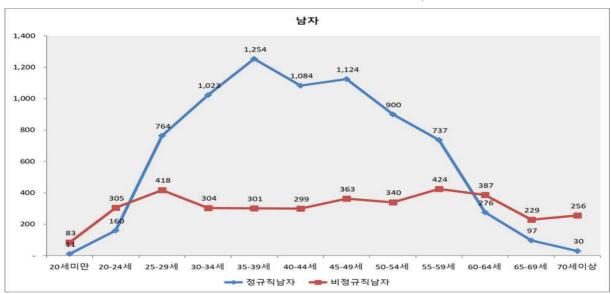
		수(천	명)	비중	·(%)	분포	(%)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	11,172	8,874	100.0	100.0	55.7	44.3
정규직		7,462	4,377	66.8	49.3	63.0	37.0
비정규직		3,710	4,497	33.2	50.7	45.2	54.8
	임시근로	3,574	4,192	32.0	47.2	46.0	54.0
고용계약	장기임시근로	1,930	2,236	17.3	25.2	46.3	53.7
고공계극	한시근로	1,644	1,956	14.7	22.0	45.7	54.3
	(기간제)	1,388	1,616	12.4	18.2	46.2	53.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737	1,971	6.6	22.2	27.2	72.8
	호출근로	603	198	5.4	2.2	75.3	24.7
	특수고용	157	349	1.4	3.9	31.0	69.0
방식	파견용역	435	350	3.9	3.9	55.4	44.6
37	(파견)	97	92	0.9	1.0	51.3	48.7
	(용역)	337	258	3.0	2.9	56.6	43.4
	가내근로	4	49	0.0	0.6	7.5	92.5

[그림 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4.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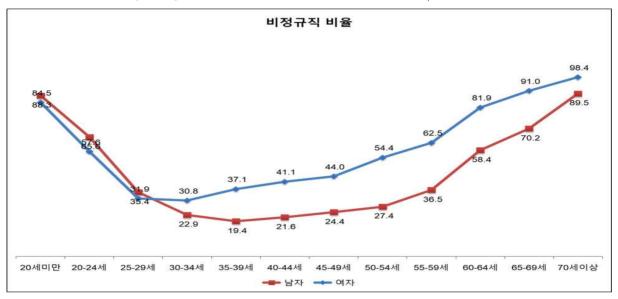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는 20대 후반부터 40대 후반까지는 정규직이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비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3만 명)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초반(26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39만 명, 50대 초반에는 54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그림 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18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19~24%)를 저점으로 하는 'U자 형'을 그리는데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31.9%)을 저점으로 하는 'V자형'을 그리고 있다. 20대 이 한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18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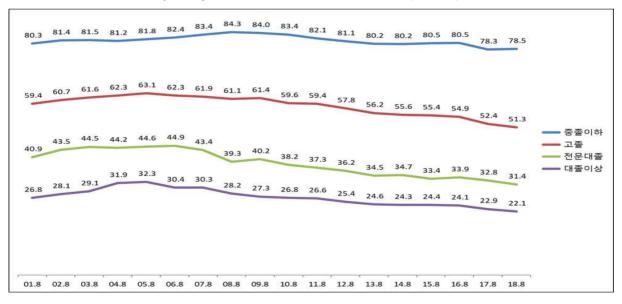
5. 학력

비정규직 821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88만 명(22.9%), 고졸은 379만 명(46.2%)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69.2%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78.5%, 고졸51.3%, 전문대졸 31.4%, 대졸 이상 22.1%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 4]와 [그림 8] 참조).

[표 4]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수(천	명)			비율	! (%)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임금노동자	2,400	7,402	2,879	7,364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517	3,608	1,974	5,739	21.5	48.7	68.6	77.9
비정규직	1,883	3,794	905	1,625	78.5	51.3	31.4	22.1
임시근로	1,811	3,612	836	1,507	75.5	48.8	29.0	20.5
장기임시근로	936	2,166	437	626	39.0	29.3	15.2	8.5
한시근로	875	1,445	399	881	36.5	19.5	13.9	12.0
(기간제)	754	1,121	345	785	31.4	15.1	12.0	10.7
시간제근로	783	1,210	222	494	32.6	16.3	7.7	6.7
호출근로	311	404	36	50	13.0	5.5	1.3	0.7
특수고용	55	244	80	127	2.3	3.3	2.8	1.7
파견용역	259	372	58	95	10.8	5.0	2.0	1.3
(파견)	44	88	25	32	1.8	1.2	0.9	0.4
(용역)	215	283	33	63	9.0	3.8	1.1	0.9
가내근로	15	19	8	12	0.6	0.3	0.3	0.2

[그림 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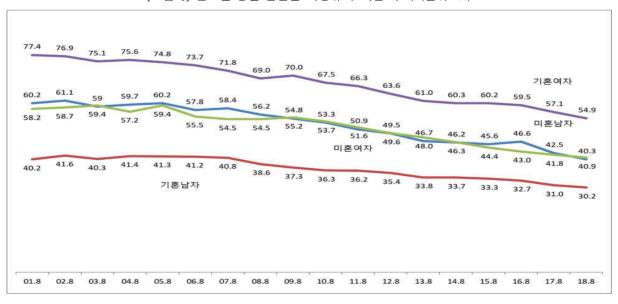
6.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821만 명 가운데 기혼여자는 341만 명(41.5%), 기혼남자는 236만 명(28.8%)으로 기혼자가 70.3%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남자 40.3%, 기혼남자 30.2%, 미혼여자 40.9%, 기혼여자 54.9%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없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 5]와 [그림 9] 참조).

[표 5]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수(찬	년 명)			비중	÷(%)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미혼남자	기혼남자	미혼여자	기혼여자
임금노동자	3,349	7,821	2,665	6,209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000	5,461	1,576	2,801	59.7	69.8	59.1	45.1
비정규직	1,349	2,360	1,089	3,408	40.3	30.2	40.9	54.9
임시근로	1,306	2,267	1,052	3,140	39.0	29.0	39.5	50.6
장기임시근로	737	1,192	536	1,699	22.0	15.2	20.1	27.4
한시근로	569	1,075	516	1,441	17.0	13.7	19.4	23.2
(기간제)	440	948	404	1,212	13.1	12.1	15.2	19.5
시간제근로	342	395	453	1,519	10.2	5.1	17.0	24.5
호출근로	135	467	17	181	4.0	6.0	0.6	2.9
특수고용	44	113	30	319	1.3	1.4	1.1	5.1
파견용역	126	308	32	318	3.8	3.9	1.2	5.1
(파견)	36	61	17	75	1.1	0.8	0.6	1.2
(용역)	90	247	15	243	2.7	3.2	0.6	3.9
가내근로	2	2	2	47	0.1	0.0	0.1	0.8

[그림 9] 연도별·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5명 중 3명(477만 명, 58.1%)이 숙박·음식점업(104만 명), 도·소매업(100만 명), 건설업(99만 명), 사업지원서비스업(87만 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86만 명) 등 5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100.0%(가사서비스업), 최소 5.9%(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 6] 참조).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비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농업임업어업	92	27	24			80.0	23.5	20.9		
광업	1	1				5.9	5.9			
제조업	707	252	130	3	13	17.9	6.4	3.3	0.1	0.3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9	4			2	12.7	5.6			2.8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	28	10	9		2	22.8	8.1	7.3		1.6
건설업	986	226	117	2	32	62.2	14.3	7.4	0.1	2.0
금융보험업	311	71	39	216		38.7	8.8	4.9	26.9	
부동산임대업	214	75	55	23	22	60.3	21.1	15.5	6.5	6.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42	78	42	2	3	15.4	8.4	4.5	0.2	0.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874	468	144	19	626	73.3	39.2	12.1	1.6	52.5
도매소매업	1,004	175	320	109	21	44.6	7.8	14.2	4.8	0.9
운수업	231	89	34	20	7	29.2	11.3	4.3	2.5	0.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114	63	32	3	6	14.6	8.0	4.1	0.4	0.8
숙박음식점업	1,044	140	469	2	13	76.7	10.3	34.4	0.1	1.0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197	56	96	8	3	68.2	19.4	33.2	2.8	1.0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서비스업	407	70	142	43	4	53.8	9.3	18.8	5.7	0.5
가구내고용활동 등	39	1	19			100	2.6	48.7		
	329	308	207		3	29.1	27.2	18.3		0.3
교육서비스업	614	307	312	51	5	40.8	20.4	20.7	3.4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862	581	518	5	23	43.1	29.1	25.9	0.3	1.2
국제외국기관	3	1	1			33.3	11.1	11.1		
전 산업	8,208	3,003	2,710	506	785	40.9	15.0	13.5	2.5	3.9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489만 명, 59.6%)은 단순노무직(254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35만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81.0%(단순노무직)에서 최소 9.0%(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 7] 참조).

[표 7]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	수(천 명)					비율(%)		
	비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비 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특수 고용	파견 용역
관리자	31	23	3		4	9.0	6.7	0.9		1.2
전 문 가	1,133	609	400	75	18	25.0	13.4	8.8	1.7	0.4
시무직	786	420	234	14	53	17.7	9.5	5.3	0.3	1.2
서비스직	1,325	351	652	19	62	67.1	17.8	33.0	1.0	3.1
판매직	1,022	137	310	321	45	61.6	8.3	18.7	19.3	27
농림어업 숙련직	46	16	6		1	70.8	24.6	9.2		1.5
기능직	832	194	80	7	53	49.1	11.5	4.7	0.4	3.1
장치기계조작 조립원	490	224	42	30	80	223	10.2	1.9	1.4	3.6
단순노무직	2,543	1,031	983	39	470	81.0	328	31.3	1.2	15.0
전 직업	8,208	3,005	2,710	505	786	40.9	15.0	13.5	25	3.9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4.0%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71.9%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기간제근로와 특수고용형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형을 그리고 있다([표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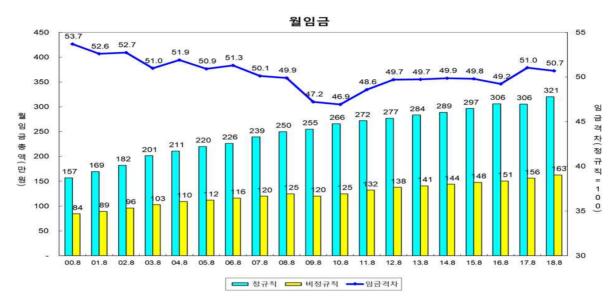
[표 8]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18년 8월)

			수(천	명)					비중	·(%)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 29인	30~ 99인	100~ 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528	3,544	4,589	3,891	1,958	2,53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90	1,625	2,689	2,817	1,536	2,181	28.1	45.9	58.6	72.4	78.4	86.0
비정규직	2,538	1,919	1,900	1,074	422	354	71.9	54.1	41.4	27.6	21.6	14.0
임시근로	2,457	1,828	1,782	993	375	331	69.6	51.6	38.8	25.5	19.2	13.1
장기임시근로	1,715	1,127	822	360	96	46	48.6	31.8	17.9	9.3	4.9	1.8
한시근로	742	701	961	633	279	284	21.0	19.8	20.9	16.3	14.2	11.2
(기간제)	489	545	842	590	262	276	13.9	15.4	18.3	15.2	13.4	10.9
시간제근로	1,060	605	590	288	93	72	30.0	17.1	12.9	7.4	4.7	2.8
	293	307	150	35	13	3	8.3	8.7	3.3	0.9	0.7	0.1
특수고용	97	55	183	144	19	8	2.7	1.6	4.0	3.7	1.0	0.3
파견용역	166	184	241	117	57	20	4.7	5.2	5.3	3.0	2.9	0.8
(파견)	38	37	49	29	24	12	1.1	1.0	1.1	0.7	1.2	0.5
(용역)	128	147	192	87	33	8	3.6	4.1	4.2	2.2	1.7	0.3
가내근로	30	11	6		3	2	0.9	0.3	0.1		0.2	0.1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017년 8월 306만 원에서 2018년 8월 321만 원으로 15만원(4.8%)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56만 원에서 163만 원으로 7만 원(4.2%)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1.0%에서 50.7%로 0.3%p 확대되었다([그림 10]과 [표 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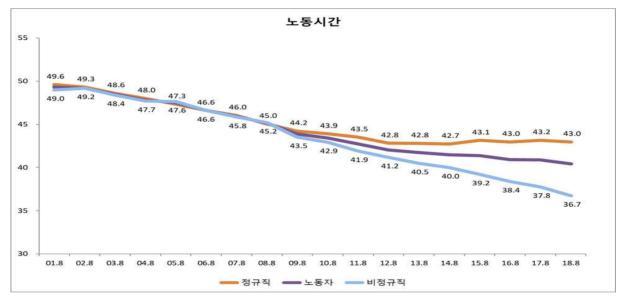
[그림 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표 9]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	액(만 원	ī)			,	격 차(%)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임금노동자	223	230	237	242	256	77.3	77.4	77.4	79.2	79.8
정규직	289	297	306	306	321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44	148	151	156	163	49.9	49.8	49.2	51.0	50.7
임시근로	143	147	150	155	161	49.6	49.4	48.9	50.7	50.2
장기임시근로	137	139	141	150	155	47.5	47.0	46.2	48.9	48.3
한시근로	152	156	160	162	168	52.6	52.5	52.3	52.9	52.5
(기간제)	158	163	166	170	176	54.8	54.8	54.1	55.7	55.0
시간제근로	66	71	74	80	87	22.9	23.8	24.2	26.2	27.1
호출근로	127	129	137	154	159	44.1	43.5	44.9	50.4	49.7
특수고용	207	197	200	215	201	71.7	66.5	65.4	70.4	62.8
파견용역	142	149	152	160	176	49.1	50.1	49.8	52.4	54.8
(파견)	153	159	174	175	193	52.9	53.6	57.0	57.1	60.3
(용역)	138	145	146	156	170	47.9	49.0	47.8	51.1	53.0
가내근로	60	83	78	77	98	20.9	28.0	25.4	25.2	30.6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8월 49.6시간에서 2014년 8월 42.7시간으로 6.9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는 43.0시간으로 0.3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49.0시간에서 2014년 8월 40.0시간으로 9.0시간 단축되었고, 2018년 8월에는 36.7시간으로 다시 3.3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 비중은 비정규직(9.7%)이 정규직(7.2%)보다 많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도 비정규직(34.4%)이 정규직(0.3%)보다 많다([그림 11]과 [표 10] 참조).



[그림 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표 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	_{오)} 노동시	l간		20	18년 8월	노동시	간 계층	별 문포(%)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36미만	36~40	41~44	45~48	49~52	52초과
임금노동자	41.5	41.4	40.9	40.9	40.4	14.2	56.8	2.2	11.4	7.0	8.2
정규직	42.7	43.1	43.0	43.2	43.0	0.3	70.3	2.7	12.4	7.2	7.2
비정규직	40.0	39.2	38.4	37.8	36.7	34.4	37.5	1.6	10.0	6.9	9.7
임시근로	40.0	39.2	38.4	37.8	36.9	32.9	38.1	1.7	10.3	7.0	10.0
장기임시근로	41.1	40.1	39.6	39.0	38.4	31.9	34.3	1.8	11.3	8.8	11.9
한시근로	38.4	38.2	36.9	36.3	35.2	34.1	42.5	1.6	9.0	5.0	7.8
(기간제)	38.1	37.9	36.9	36.7	35.2	32.1	45.6	1.7	9.0	4.5	7.2
시간제근로	21.0	20.7	20.8	20.8	20.5	99.9	0.1				
호출근로	38.4	37.1	37.7	37.8	37.1	32.7	40.2	1.1	13.0	7.1	5.9
특수고용	40.6	39.5	39.3	40.2	40.3	18.0	52.3	2.2	11.5	10.5	5.5
파견용역	44.1	43.0	42.5	42.9	42.3	15.9	48.9	1.8	12.1	7.4	13.9
(파견)	40.7	37.5	39.1	39.3	39.7	16.9	54.0	1.1	13.8	6.3	7.9
(용역)	45.2	44.7	43.5	43.8	43.2	15.7	47.2	2.0	11.6	7.7	15.7
가내근로	36.0	32.1	30.1	27.8	31.4	53.7	33.3		5.6	1.9	5.6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17년 8월 16,698원에서 2018년 8월 17,523원으로 825원(4.9%)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9,676원에서 10,400원으로 734원(7.5%) 상승했다. 정규직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58.0%에서 59.3%로 1.3%p 축소되었다([그림 12]와 [표 11] 참조).



[그림 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 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 = 100)

		•	금액(원)					격 차(%)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임금노동자	12,533	12,918	13,464	13,722	14,607	78.7	79.7	80.2	82.2	83.4
정규직	15,918	16,207	16,795	16,698	17,52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461	8,893	9,312	9,676	10,400	53.2	54.9	55.4	58.0	59.3
임시근로	8,392	8,762	9,204	9,553	10,212	52.7	54.1	54.8	57.2	58.3
장기임시근로	7,823	8,235	8,427	8,976	9,465	49.1	50.8	50.2	53.8	54.0
한시근로	9,195	9,439	10,216	10,297	11,076	57.8	58.2	60.8	61.7	63.2
(기간제)	9,603	9,891	10,570	10,716	11,531	60.3	61.0	62.9	64.2	65.8
시간제근로	7,645	8,423	8,984	9,183	10,157	48.0	52.0	53.5	55.0	58.0
호출근로	7,574	7,941	8,413	9,314	9,856	47.6	49.0	50.1	55.8	56.2
특수고용	11,906	11,536	11,877	12,254	11,548	74.8	71.2	70.7	73.4	65.9
파견용역	7,645	8,183	8,735	8,997	9,862	48.0	50.5	52.0	53.9	56.3
(파견)	8,618	9,600	10,234	10,843	11,402	54.1	59.2	60.9	64.9	65.1
(용역)	7,333	7,730	8,302	8,500	9,373	46.1	47.7	49.4	50.9	53.5
가내근로	3,939	6,288	6,590	7,114	7,600	24.7	38.8	39.2	42.6	43.4

4. 임금불평등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전 산업 월 임금총액 평균값을 계산하면 2017년 8월 242만 원에서 2018년 8월 256만 원으로 14만 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cut-off)의 월 임금총액은 80만 원에서 90만원으로 10만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총액은 450만 원에서 454만 원으로 4만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10% 컷오프의 임금격차(P9010)는 5.63배에서 5.04배로 크게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2017년 8월 13,722원에서 2018년 8월 14,607원으로 885원 증가했다.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은 5,987원에서 6,908원으로 921원 증가했고, 상위 10% 컷오프 의 시간당 임금은 24,753원에서 25,905원으로 1,152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격차(P9010)는 4.13배에서 3.75배로 감소했다([표 12] 참조).

[丑	12]	연도별	임금불평등
----	-----	-----	-------

		월 임	금총액(면	<u></u> 원)		시간당 임금(원)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평균값	223	230	237	242	256	12,533	12,918	13,464	13,722	14,607	
하위 10%	80	80	80	80	90	4,989	5,410	5,757	5,987	6,908	
50%	190	200	200	200	210	10,234	10,362	10,788	11,513	11,513	
90%	400	420	450	450	454	23,026	23,602	25,041	24,753	25,905	
P9010	5.00	5.25	5.63	5.63	5.04	4.62	4.36	4.35	4.13	3.75	
P5010	2.38	2.50	2.50	2.50	2.33	2.05	1.92	1.87	1.92	1.67	
P9050	2.11	2.10	2.25	2.25	2.16	2.25	2.28	2.32	2.15	2.25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매우 크다. 2018년 8월의 월 임금총액이 여자(194만 원)는 남자 (305만 원)의 63.8%이고, 비정규직(163만 원)은 정규직(321만 원)의 50.7%이다. 남자 정규직 임금(358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197만 원)은 54.9%, 여자 정규직(256만 원)은 71.5%, 여자 비정규직(134만 원)은 37.5%이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임금격차도 매년 개선되고는 있지만 마찬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표 13] 참조).

[표 13]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시긴	·당 임금	(원)		임금격차(%)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남자	14,808	15,174	15,741	15,878	16,781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9,562	10,009	10,555	10,996	11,870	64.6	66.0	67.1	69.3	70.7	
정규직	15,918	16,207	16,795	16,698	17,52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8,461	8,893	9,312	9,676	10,400	53.2	54.9	55.4	58.0	59.3	
남자정규직	17,891	18,135	18,773	18,584	19,445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비정규직	9,598	10,097	10,509	10,727	11,422	53.6	55.7	56.0	57.7	58.7	
여자정규직	12,227	12,683	13,278	13,412	14,247	68.3	69.9	70.7	72.2	73.3	
여자비정규직	7,478	7,860	8,284	8,804	9,556	41.8	43.3	44.1	47.4	49.1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임금노동자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 2분의 3 미만'을 중 간임금 계층, '중위임금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위임금 (11,513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7,675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04만 명 가운데 315만 명(15.7%)이 저임금계층이고, 정규직은 45만 명(3.8%), 비정규직은 270만 명(32.9%)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25명 중 1명, 비정규직은 3명 중 1명이 저임금 계층인데, 지난 1년 사이 저임금 계층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그림 13] 참조).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00만 원)의 3분의 2'인 '1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004만 명 가운데 359만 명(17.9%)이 저임금계층이다.

지임금

20044
주: 처임금=시간당 임금 중위값(11,513원)의 2/3인 7,675원 미만

11838
8206
8206
453
임금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그림 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18년 8월, 단위: 천 명)

[표 14]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월 2	금총액	기준		시간당 임금 기준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저임금	24.5	25.5	23.9	20.5	17.9	24.1	24.5	22.6	21.5	15.7	
중간임금	49.5	48.3	48.4	50.4	57.3	49.4	49.1	51.1	56.6	60.1	
고임금	26.1	26.3	27.8	29.0	24.8	26.5	26.4	26.3	21.9	24.1	

KLSI ISSUE PAPER

[그림 14] 임금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8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¹⁾는 237만 명(전체 노동자의 11.8%)이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 명(3.7%)에서 2008년 139만 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 명(7.8%), 2010년에는 122만 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 8월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182~184만 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 8월에는 175만 명(8.8%)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 8월에는 237만 명(11.8%)으로 크게 증가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2018년 8월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11만 명(15.5%)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 명(4.4%)에서 2009년 210만 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17년에는 266만 명(13.6%), 2018년에는 311만 명(15.5%)으로 증가했다.

노동자 6명 중 1명꼴로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정부가 근로감독 행정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6만 명(13.8%)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그림 16] 참조).

¹⁾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하다.



[그림 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시급제 노동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7,530원) 미달자는 6만 명(3.4%)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84만 명(48.8%)이며, 2018년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2019년 최저임금(8,350원)에 못 미치는 사람은 29만 명(17.0%)이다. 이상은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 임금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표 15] 참조).

[14	15] 시근제	노도자이	시가다	이그	부포	(다위:	처 ㅁ	4 %

	최저임금 미달	7,530원	7,531 ~ 8,349원	8,350 ~ 9,000원	9,001~ 1만원	1만원초과	전체
<u>수(천</u> 명)	58	842	294	264	151	117	1725
비율(%)	3.4	48.8	17.0	15.3	8.8	6.8	100.0
 누적%	3.4	52.2	69.2	84.4	93.2	100.0	

2018년 8월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은 여성(17.3%)이 남성(7.5%)보다 높고, 기혼여성(18.7%), 미혼여성(14.1%), 미혼남성(10.6%), 기혼남성(6.1%)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37.5%)과 저학력 층(27.3%), 연령별로는 청년(27.3%)과 고령자(20.4%)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22.6%) 가운데서도 특히 시간제근로(33.6%)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27.8%)과 일용직(17.2%)과 일용직(18.2%)이 높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2.9%)과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2.5%)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5%),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1.1%), 교육서비스업(6.4%)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28.2%)과 서비스직(25.7%)이 높고, 5인 미만(23.1%), 5~9인(15.8%)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 (14.3%), 유노조 비조합원(7.0%), 유노조 조합원(2.3%)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은 여성 친화적이고, 청년 학생과 저학력 고령자 친화적이며, 무노조 비조합원 친화적이고, 비정규직 친화적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사회적 약자 17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 16] 참조).

2018년 8월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여성(21.8%)이 남성(10.5%)보다 높고, 기혼여성(24.8%), 미혼여성(14.7%), 미혼남자(13.9%), 기혼남자(9.1%) 순이다. 학력별로는 학생(45.1%)과 저학력 층(41.4%), 연령별로는 청년(32.4%)과 고령자(30.9%)가 높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32.5%) 가운데서도 특히 가내근로(54.7%)와 시간제근로(42.3%)가 높고,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38.5%)과 일용직(40.5%)이 높다.

산업별로는 가구내고용활동 등(69.2%), 숙박·음식점업(43.1%), 농·림·어업(40.4%)이 특히 높고,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7.4%),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3.8%) 등 공공부문도 높은 편에 속한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41.2%)과 서비스직(32.8%)이 높고, 5인 미만(36.3%), 5~9인 (19.7%) 등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높다. 노조유무별로는 무노조 (19.0%), 유노조 비조합원(8.2%), 유노조 조합원(2.4%) 순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미달자는 최저임금 수혜자와 동질적인 집단이다. 여성, 학생과 저학력 층, 청년과 고령자,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 영세사업체, 비정규직 그 가운데서도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과 일용직, 무노조 사업장, 비조합원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하면 이들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표 16] 참조).

KLSI ISSUE PAPER

[표 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8년 8월)

			수(:	천 명)		최저역	임금 수혀	예자와 미	달자
			90%	90~	100~	수(천		비율	! (%)
		전체	미만	100%미만		수혜자	미달자	수혜자	미달자
전	체	20,046	1,785	1,327	1,047	2,374	3,112	11.8	15.5
성별	남자	11,172	722	456	381	837	1,178	7.5	10.5
o	여자	8,874	1,063	871	666	1,537	1,934	17.3	21.8
	미혼	6,014	464	394	337	731	858	12.2	14.3
혼인상태	유배우	12,283	972	657	546	1,203	1,629	9.8	13.3
E 1.64	사별	757	200		74	250	376	1	49.7
	이혼	990	148		90	189	247	19.1	24.9
	미혼남자	3,349	281	186	169	355	467	10.6	13.9
성별혼인	기혼남자	7,822	441	269	212	481	710	6.1	9.1
0200	미혼여자	2,665	183	208	168	376	391	14.1	14.7
	기혼여자	6,208	879	663	498	1,161	1,542	18.7	24.8
	가구주	11,208	852	602	483	1,085	1,454	9.7	13.0
가구주	배우자	4,293	523	348	289	637	871	14.8	20.3
	기타가구원	4,544	409	377	274	651	786	14.3	17.3
	중졸이하	2,384	586	400	251	651	986	27.3	41.4
	고졸	6,757	718	512	487	999	1,230	14.8	18.2
학력	전문대졸	2,880	132	107	109	216	239	7.5	8.3
	대졸이상	7,364	221	137	123	260	358	3.5	4.9
	재학휴학중	661	127	171	77	248	298	37.5	45.1
	25세미만	1,423	214	247	142	389	461	27.3	32.4
	25-34세	4,442	218	139	159	298	357	6.7	8.0
연령	35-44세	4,871	211	158	163	321	369	6.6	7.6
	45-54세	4,865	317	233	227	460	550	9.5	11.3
	55세이상	4,444	824	550	355	905	1,374	20.4	30.9
고용형태	정규직	11,837	233	212	303	515	445	4.4	3.8
T 0 0 9 1	비정규직	8,207	1,551	1,114	744	1,858	2,665	22.6	32.5
	임시근로	7,765	1,524	1,087	706	1,793	2,611	23.1	33.6
	장기임시근로	4,166	971	573	389	962	1,544	23.1	37.1
	한시근로	3,601	554	514	318	832	1,068	23.1	29.7
	기간제근로	3,005	380	417	255	672	797	22.4	26.5
	시간제근로	2,709	586	561	349	910	1,147	33.6	42.3
세부고용형태	호출근로	800	203	64	40	104	267	13.0	33.4
	특수고용형태	506	103	27	25	52	130	10.3	25.7
	파견용역	784	112	97	84	181	209	23.1	26.7
	파견근로	190	18	15	13	28	33	14.7	17.4
	용역근로	595	95	82	71	153	177	25.7	29.7
	가내근로	53	25	4	2	6	29	11.3	54.7
	상용	13,794	346	332	435	767	678	5.6	4.9
종사상지위	임시	4,859	1,033	836	517	1,353	1,869	27.8	38.5
	일용	1,391	405	158	95	253	563	18.2	40.5

KLSI ISSUE PAPER

[표 16]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실태 (2018년 8월, 계속)

			수(:	천 명)			임금 수혀		
		저귀	90%	90~	100~	수(천		비율	
		전체	미만	100%미만	110%미만	수혜자	미달자	수혜자	미달자
	농림어업	114	38	8	6	14	46	12.3	40.4
	광업	17							
	제조업	3,941	143	129	131	260	272	6.6	6.9
	전기가스수도사업	71			1	1		1.4	
	하수환경복원업	124	3	7	4	11	10	8.9	
	건설업	1,584	118	51	49	100	169	6.3	
	금융보험업	803	36	7	16	23	43	2.9	
	부동산임대업	355	52	24	29	53	76	14.9	
	전문과학기술	925	26	6	15	21	32	2.3	3.5
	사업지원서비스업	1,191	141	109	103	212	250	17.8	21.0
산업	도소매업	2,251	276	210	143	353	486	15.7	21.6
	운수업	792	91	34	49	83	125	10.5	15.8
	출판통신정보	784	9	14	11	25	23	3.2	2.9
	숙박음식점업	1,361	328	258	190	448	586	32.9	43.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89	34	40	25	65	74	22.5	25.6
	기타개인서비스업	757	182	75	49	124	257	16.4	33.9
	가구내고용활동 등	39	25	2	5	7	27	17.9	69.2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	1,131	59	97	28	125	156	11.1	13.8
	교육서비스업	1,506	72	56	40	96	128	6.4	8.5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997	151	197	152	349	348	17.5	17.4
	국제외국기관	9		1		1	1	11.1	11.1
	관리자	345	3				3		0.9
	전문가	4,537	125	92	113	205	217	4.5	4.8
	사무직	4,431	99	95	90	185	194	4.2	4.4
	서비스직	1,976	369	279	228	507	648	25.7	32.8
직업	판매직	1,658	244	180	123	303	424	18.3	25.6
	농림어업숙련직	63	7	2	5	7	9	11.1	14.3
	기능직	1,695	89	55	61	116	144	6.8	8.5
	장치기계조작	2,199	114	64	102	166	178	7.5	8.1
	단순노무직	3,139	734	559	325	884	1,293	28.2	41.2
	1~4인	3,529	800	480	334	814	1,280	23.1	36.3
	5~9인	3,545	399	298	262	560	697	15.8	19.7
규모	10~29인	4,589	338	347	232	579	685	12.6	14.9
ITI	30~99인	3,891	164	119	149	268	283	6.9	7.3
	100~299인	1,958	55	52	45	97	107	5.0	5.5
	300인 이상	2,535	28	32	25	57	60	2.2	2.4
-	무노조	14,989	1,649	1,193	943	2,136	2,842	14.3	19.0
노조	유노조비조합원	2,560	96	113	66	179	209	7.0	8.2
	유노조조합원	2,497	40	20	38	58	60	2.3	2.4

7. 임금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9.4%)와 연봉제(26.8%)의 비중이 96.2%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8.7%), 일급제(19.1%), 시급제(18.1%), 실적급제(9.0%), 연봉제(4.5%)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40.9%), 월급제(36.2%), 일급제(14.9%), 실적급제(6.3%) 순으로 임금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호출근로는 일급제(86.5%),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67.0%), 가내근로는 실적급제(54.7%)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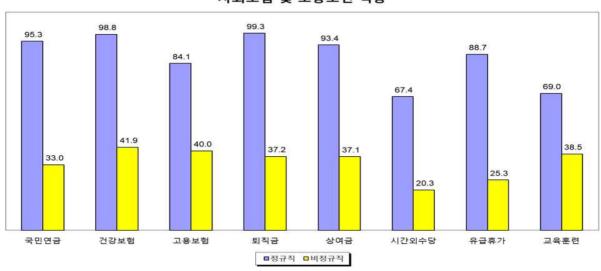
[표 17] 고용형태별 임금지급 방식 (2018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 체
임금노동자	8.6	8.4	0.2	60.9	17.7	4.1	0.0	100.0
정규직	2.0	0.9	0.0	69.4	26.8	0.8	0.0	100.0
비정규직	18.1	19.1	0.5	48.7	4.5	9.0	0.1	100.0
임시근로	18.5	20.1	0.5	47.2	4.3	9.3	0.1	100.0
장기임시근로	16.3	26.6	0.7	41.4		14.9	0.1	100.0
한시근로	21.0	12.6	0.2	54.0	9.3	2.9	0.1	100.0
(기간제)	18.9	11.3	0.1	57.0	10.8	1.8	0.1	100.0
시간제근로	40.9	14.9	0.4	36.2	1.2	6.3	0.1	100.0
호출근로	9.0	86.5	1.0			3.5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12.3	15.3	0.3	67.0	4.5	0.6		100.0
(파견)	10.6	15.3	0.5	64.0	7.4	2.1		100.0
(용역)	12.9	15.3	0.2	68.1	3.4	0.2		100.0
가내근로	5.7	7.5		24.5	5.7	54.7	1.9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33~42%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67~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0~39%만 적용받고 있다([그림 17]과 [표 18] 참조).

[그림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8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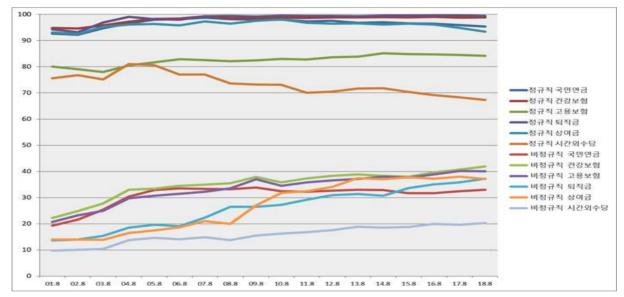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

[표 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18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69.8	75.5	66.1	73.9	70.4	48.1	62.8	56.5
정규직	95.3	98.8	84.1	99.3	93.4	67.4	88.7	69.0
비정규직	33.0	41.9	40.0	37.2	37.1	20.3	25.3	38.5
임시근로	30.5	38.8	37.2	33.9	34.8	18.6	22.7	37.4
장기임시근로	17.7	22.5	24.9	19.0	26.6	8.9	6.8	24.5
한시근로	45.3	57.7	51.5	51.1	44.3	29.9	41.1	52.2
(기간제)	51.3	65.3	57.6	57.8	48.8	33.3	47.8	58.8
시간제근로	18.6	25.0	24.7	21.4	22.6	13.0	12.7	35.3
	0.5	0.6	8.1	0.5	4.8	6.7	0.1	11.6
특수고용	6.1	6.5	8.2	4.7	14.4	1.6	2.4	68.7
파견용역	46.1	78.3	65.0	73.7	57.8	37.1	51.9	50.4
(파견)	59.4	74.0	74.3	71.9	60.4	46.0	56.2	58.3
(용역)	41.9	79.7	62.1	74.3	56.9	34.2	50.5	47.9
가내근로	24.8	25.6	22.4	23.0	23.8		19.9	16.7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이 93~98%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 유급휴가 적용률은 89%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67%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18년 33~42%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0~37%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노동조건 적용률은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이는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사업체 소속 상용직을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와 근로기준법 체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18]과 [표 19] 참조).



[그림 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14년 8월	15년 8월	16년 8월	17년 8월	18년 8월	
국민연금	97.0	96.6	96.4	95.9	95.3	32.9	32.4	31.7	32.5	33.0	
건강보험	98.9	98.9	99.1	98.8	98.8	38.3	38.9	39.6	40.8	41.9	
고용보험	85.1	84.8	84.7	84.5	84.1	38.0	38.7	38.9	40.2	40.0	
퇴직금	99.5	99.5	99.6	99.6	99.3	30.7	33.6	35.1	35.8	37.2	
상여금	96.2	96.4	96.1	94.8	93.4	37.1	38.5	37.3	38.0	37.1	
시간외수당	71.8	70.4	69.2	68.4	67.4	18.6	18.8	20.0	19.6	20.3	
유급휴가	90.0	89.2	88.8	88.2	88.7	24.4	24.8	24.6	24.5	25.3	
교육훈련경험	66.9	67.6	71.4	70.1	69.0	35.1	35.4	39.0	38.4	38.5	

KLSI ISSUE PAPER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41.9%), 지역가입(27.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7.1%), 의료수급권자(1.5%) 등 97.7%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33.0%)과 지역가입(14.6%)을 합쳐도 가입률이 47.6%밖에 안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2.5%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3%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59.1%에 이른다([표 20] 참조).

[표 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18년 8월, 단위: %)

	=	국민연금	1			건강보험	철		<u> </u>	9 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 수급권 자	직장 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23.9	69.8	6.3	1.0	75.5	11.5	0.6	11.3	26.1	66.1	7.8
정규직	4.1	95.3	0.5	0.0	98.8	0.7	0.0	0.4	3.3	84.1	12.5
비정규직	52.4	33.0	14.6	2.3	41.9	27.2	1.5	27.1	59.1	40.0	0.9
임시근로	54.2	30.5	15.3	2.4	38.8	28.7	1.6	28.5	61.9	37.2	0.9
장기임시근로	60.6	17.6	21.7	3.0	22.5	40.4	1.7	32.5	75.0	24.9	0.1
한시근로	46.7	45.3	7.9	1.8	57.7	15.1	1.4	23.9	46.7	51.5	1.9
(기간제)	42.2	51.3	6.5	1.4	65.3	11.7	1.4	20.2	40.2	57.6	2.2
시간제근로	70.9	18.6	10.6	2.3	25.0	25.0	3.0	44.6	74.9	24.7	0.4
	71.8	0.5	27.8	5.1	0.6	53.9	2.1	38.3	91.9	8.1	
특수고용	46.9	6.1	46.9	1.0	6.5	64.0	1.0	27.5	91.5	8.1	0.4
파견용역	48.4	46.1	5.5	1.1	78.3	10.8	0.8	8.9	34.8	65.0	0.3
(파견)	35.1	59.6	5.3	1.1	74.1	11.6		13.2	25.4	74.6	
(용역)	52.6	41.8	5.5	1.2	79.7	10.6	1.0	7.6	37.6	62.2	0.2
가내근로	60.4	24.5	15.1		26.4	34.0	1.9	37.7	77.4	22.6	

9. 근속년수

2018년 8월 임금노동자 근속년수 평균은 6.0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4년에서 8.6년으로 0.2년 길어졌고, 비정규직은 2.4년에서 변함이 없다.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가 정규직은 14.6%인데 비정규직은 54.3%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 21] 참조).

[표 21] 근속년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18년 8월, 단위: %)

	근속	년수			분포	.(%)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6.0	2.6	30.9	12.9	8.4	11.0	14.8	22.0
정규직	8.6	5.4	14.6	11.7	8.5	12.9	19.4	32.9
비정규직	2.4	0.8	54.3	14.7	8.1	8.2	8.3	6.4
임시근로	2.3	0.7	55.8	14.8	8.0	7.9	7.6	5.9
장기임시근로	2.3	0.7	56.3	14.9	8.0	7.3	6.9	6.7
한시근로	2.3	0.7	55.2	14.7	8.1	8.4	8.4	5.1
(기간제)	2.4	0.8	53.3	14.6	8.3	8.9	9.2	5.7
시간제근로	1.7	0.4	64.6	12.7	6.1	6.9	6.2	3.5
호출근로	0.1		99.0	0.6	0.2			0.1
특수고용	6.3	3.1	25.0	15.0	9.5	11.5	13.7	25.3
파견용역	2.9	1.3	44.3	15.2	11.1	9.9	11.8	7.6
(파견)	3.5	1.3	44.2	15.3	10.0	7.4	11.6	11.6
(용역)	2.8	1.3	44.4	15.1	11.6	10.8	11.8	6.4
가내근로	1.3	0.5	67.9	13.2	9.4		9.4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13.9%, 비정규직이 50.0%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근로조건 만족'(41.5%), '안정된 일자리'(40.7%)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취업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8.1%)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5.5%) 순으로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81.4%), 장기임시근로(56.2%), 파견용역(52.4%), 시간제근로(47.9%), 기간제근로(43.0%), 특수고용(41.1%) 순이다([표 22] 참조).

[표 22] 고용형태별 취업동기 (2018년 8월, 단위: %)

	자발적 :	취업여부	자빌	적 취업 /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 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 일자리 없음	전공경력 맞는 일자리 없음	기타
임금노동자	71.3	28.7	35.6	27.4	8.3	22.0	3.1	1.1	2.5
정규직	86.1	13.9	41.5	40.7	3.9	10.8	1.5	0.8	0.8
비정규직	50.0	50.0	27.2	8.3	14.5	38.1	5.5	1.6	4.9
임시근로	48.6	51.4	26.4	7.5	14.6	39.2	5.5	1.6	5.0
장기임시근로	43.8	56.2	22.3	4.3	17.2	43.1	5.9	1.6	5.6
한시근로	54.1	45.9	31.2	11.2	11.7	34.7	5.2	1.6	4.4
(기간제)	57.0	43.0	34.0	13.0	10.0	32.9	4.7	1.6	3.8
시간제근로	52.1	47.9	27.0	4.0	21.1	32.8	5.5	1.3	8.2
호출근로	18.6	81.4	11.1	0.4	7.1	70.6	5.4	1.9	3.6
특수고용	58.9	41.1	22.5	2.8	33.6	30.2	3.6	1.0	6.3
파견용역	47.6	52.4	29.8	13.4	4.3	42.3	7.8	1.5	0.8
(파견)	59.3	40.7	36.0	18.5	4.8	29.6	7.4	2.6	1.1
(용역)	43.9	56.1	27.9	11.8	4.2	46.4	7.9	1.2	0.7
가내근로	62.3	37.7	32.1	7.5	22.6	26.4	3.8		7.5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 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16년에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8월에는 245만 명(12.3%)으로 1년 만에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 8월에는 250만 명(12.5%)으로 다시 5만 명(0.2%p) 증가했다. 2018년 8월 조합원 250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32만 명(19.6%)이고 비정규직은 18만 명(2.1%)이다([그림 19]와 [표 23] 참조).



[그림 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 2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18년 8월)

		수(천	명)		비율(%)				
	노조없음	노조있음/ 가입대상 아님	노조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노조없음	노조있음/ 가입대상 아님	노조있음/ 가입대상. 미가입	노조가입	
임금노동자	14,988	1,364	1,197	2,497	74.8	6.8	6.0	12.5	
정규직	7,730	720	1,066	2,322	65.3	6.1	9.0	19.6	
비정규직	7,258	644	131	175	88.4	7.8	1.6	2.1	
임시근로	6,894	610	116	146	88.8	7.9	1.5	1.9	
장기임시근로	4,031	111	10	13	96.8	2.7	0.2	0.3	
한시근로	2,863	499	106	132	79.5	13.9	2.9	3.7	
(기간제)	2,293	481	103	128	76.3	16.0	3.4	4.3	
시간제근로	2,420	242	22	25	89.3	8.9	0.8	0.9	
호출근로	791	9		1	98.8	1.1		0.1	
특수고용	480	26			94.9	5.1			
파견용역	707	36	10	32	90.1	4.6	1.3	4.1	
(파견)	161	18	3	7	85.2	9.5	1.6	3.7	
(용역)	546	18	7	25	91.6	3.0	1.2	4.2	
가내근로	51	2			96.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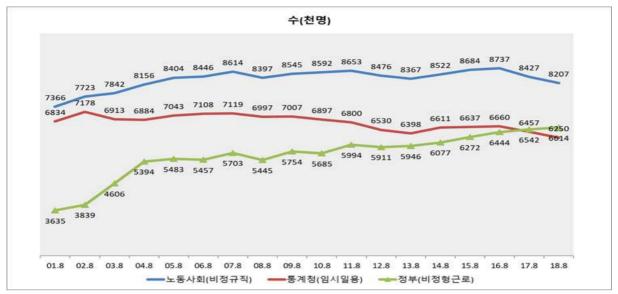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18년 8월 현재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²⁾는 661만 명(33.0%), 노동사회연구소는 821만 명 (40.9%)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 8월부터 2006년 8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54.2%)부터 2018년 8월(40.9%)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부 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 27.4%에서 2004년 8월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18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 8월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 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159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625만 명(31.2%)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196만 명(9.8%)을 합쳐 821만 명(40.9%)으로 추계했다([표 24]에서 ①+②+③).4)

³⁾ 노동부와 통계청은 이러한 분류 방식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2002년 7월)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및 범주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자세한 것은 2007년 4월 16 일자 매일노동뉴스 보도 참조바람).

⁴⁾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표 24]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18년 8월, 단위: 천 명, %)

			본 :	소계	
			상용	임시일용	그게
부 가	설문문항 없음	(정형)	④ 11,838(59.1)	① 1,593(7.9)	①+④ 13,431(67.0)
조 사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1,957(9.8)	② 4,657(23.2)	②+③ 6,614(33.0)
소계			3)+4) 13,795(68.8)	①+② 6,250(31.2)	20,045(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159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70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6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8,955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6.8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여자(37.6%)와 중졸 이하(19.6%)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31~39%,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적용률은 11~42%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21.9%로 가장 낮다([표 25] 참조).

[표 25]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16년8월			2017년8월				2018년8월				
	1	2	3	4	1	2	3	4	1	2	3	4
노동자 수 (천 명)	2,377	4,284	2,077	10,889	1,885	4,572	1,970	11,456	1,593	4,657	1,957	11,838
(%)	12.1	21.8	10.6	55.5	9.5	23.0	9.9	57.6	7.9	23.2	9.8	59.1
저임금계층 (천 명)	1,137	2,197	448	651	985	2,118	426	737	703	1755	239	453
최저임금미만(천 명)	678	1,558	201	227	628	1,543	204	284	694	1738	233	446
월 평균임금 (만 원)	159	117	209	306	170	123	213	306	179	128	225	321
시간당 임금 (원)	7,892	8,657	12,289	16,795	8,380	9,161	12,218	16,698	8,955	9,700	13,339	17,523
주노동시간 (시간)	47.3	31.8	41.8	43.0	47.6	31.1	41.5	43.2	46.8	30.9	40.2	43.0
근속년수 (년)	2.4	1.6	3.9	8.5	2.7	1.6	3.9	8.4	2.7	1.7	4.0	8.6
기혼여자비율 (%)	38.4	44.1	37.5	22.4	38.8	43.5	39.4	22.9	37.6	43.1	41.6	23.7
중졸이하비율 (%)	20.2	28.7	14.8	4.5	20.3	27.9	15.5	4.7	19.6	28.0	14.7	4.4
국민연금적용 (%)	24.4	12.5	79.8	96.4	28.7	13.4	78.3	95.9	30.8	13.5	79.1	95.3
건강보험적용 (%)	29.9	17.2	96.8	99.1	35.3	18.1	96.2	98.8	37.2	19.6	96.3	98.8
고용보험적용 (%)	34.2	18.9	85.6	84.7	38.1	20.5	85.6	84.5	38.7	20.2	85.9	84.1
퇴직금적용 (%)	24.4	10.5	98.0	99.6	27.4	11.8	97.5	99.6	32.9	12.4	97.2	99.3
상여금적용 (%)	39.2	15.3	80.3	96.1	41.3	17.4	79.3	94.8	42.1	17.4	76.8	93.4
시간외수당적용 (%)	10.9	9.6	51.8	69.2	11.0	9.7	50.6	68.4	10.5	10.7	51.4	67.4
유급휴가 (%)	10.5	7.4	76.4	88.8	10.7	7.9	75.7	88.2	11.7	8.1	77.1	88.7
교육훈련경험 (%)	23.3	34.9	65.6	71.4	22.7	34.0	65.1	70.1	21.9	33.4	65.6	69.0
노조조직률 (%)	0.6	0.4	6.3	20.0	0.9	0.5	6.9	19.8	0.4	0.6	7.2	19.6